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0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2561, 2007. 8. 14.)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안 33조제1항)
- 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퍼센트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수도요금 체납징수 대책?	○매달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음.
○수도요금 징수율과 체납요금은 얼마인가?	○수도요금 납기내 징수율은 95%며, 5%가 체납되고 있음.
○수도급수조례 주요개정 사유는?	○수도요금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2%의 가산금 인하 효과가 있음.
○수도요금 장기 연체자 어떤 사유인가?	○수도요금 장기체납자는 빈집, 재개발 편입 지역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9호
의결 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개정 지침(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2561, 2007. 8. 14.)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하향조정함.(안 33조제1항)
- 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에는 체납된 수도요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퍼센트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및 제4항)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를 “제38조”로 하고, “제15조, 제21조, 제35조”를 “제24조, 제32조, 제65조”로 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급수공사”라 함은”을 ““급수공사”란”으로 하며, “철거등”을 “철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을 ““흡수정이하의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을 ““특수가압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을 ““수도사용자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급수장치”라 함은”을 ““급수장치”란”으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를 ““세대”란 해당 건물”로 하고, “되어있고 실제 거주”를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호”라 함은”을 ““호”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전용 계량기”라 함은”을 ““전용계량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통합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등”을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호별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등”을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1호 중 ““점검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등”을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으로 하고, “호별 계량기”를 “호별계량기”로 한다.

제3조 중 “부천시의 관할구역중”을 “시의 관할구역 중”으로 하고, 단서 부분 중 “기타 비상시”를 “그 밖의 비상 시”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5호이상”을 “5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화용급수장치”를 “소화용 급수장치”로 한다.

제5조제1호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각각 “흡수정이하의장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를 “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수리계산수수료등”을 “수리계산수수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구경 100밀리미터이상”을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설계금액 확정후 납부”를 “설계금액을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를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 하고, “수용가로 하여금”을 “수용가에게”로 하며,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각각 “흡수정이하의장치”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부분 중 “시공케”를 “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을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으로 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

치 한다”를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비납입일로부터 5일이내”를 “공사비를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며, “공사계약후 3일이내”를 “공사계약 후 3일 이내”로 하고, 단서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를 “공사용 관급자재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 부분 중 “제출케”를 제출하도록“으로 한다.

제7조의제2항 중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대행업자에게”로 하고, “제출케”를 “제출하도록”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당해 신청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하고, 단서 부분 중 “개조공사시”를 “개조공사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계량기 까지”를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단서 부분 중 “호별 계량기”를 각각 “호별계량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를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로 하며, “건물안쪽”을 “건물 안쪽”으로 하고, “동파 방지등”을 “동파방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사준공후”를 “공사준공 후에”로 하고, “정산에 관

하여는”을 “정산은”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공사에 있어서는”을 “공사는”으로 하며, 단서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고, “범위내”를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기일내”를 “지정기일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준공후”를 “공사준공 후에”로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 규정에 의한다”를 “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로 하며, “준공후”를 “준공 후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전조”를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호이상”을 “2호 이상”으로 하며, “통합 계량기”를 “통합계량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부에 의하여”를 “기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에 있어서 그”를 “설치는”으로 하며,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산출방법 등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제목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를 “(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흡수정이하의장치의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흡수정이하의장치의장치”로 하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를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를 “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 공사”를 “해당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후 3년 이내”를 “준공 후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당해 급수장치”를 “해당 급수장치”로 하고, “않고”를 “아니하고”로 하며, 단서 부분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를 “직원에게 직접 조사하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를 “처리하도록”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각각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않도록”을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아니된다”를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 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수도 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①급수장치”를 “급수장치”로 하고, “당해 급수장치”를 “해당 급수장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단서 부분 중 “긴급불가 피한”을 “긴급하고 불가피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필요에 의하여”를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개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청에 의거”를 “신청에 따라”로 하고, ““호””를 ““호”를 포함한다”로 하며, “분양시”를 “분양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을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월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 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를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각각 “수도사용자등”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를 “제3호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 부분 중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을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단서 부분 중 “적용함이 심히”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로 하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을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분리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 15m³”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미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매월”을 “매월 또는 격월”으로 하고,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를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개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과 할”을 “부과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급수중지를 해제하고자 할 때
4.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
5. 시장이 수시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제29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에 의하여”를 “수도계량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 하고, “4월”을 “4개월”로 하며, 단서 부분 중 “4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가구이상”을 “2가구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를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그월분”을 “그 월분”으로 하고, “정정하고”를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 규정에 의한”을 “수도사용자등이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체납액이 100분의 5”를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수도요금고지서로 한다.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수도요금(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 중 “납부고지서에 의하여”를 “납부고지서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타 일시적”을 “일시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급수종료후”를 “급수종료 후에”로 하고, “그과부족액은 익월분”을 “과부족액은 다음월분”으로 한다.

제36조 본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정용이외”를 “가정용 이외”로 하고, “100밀리미터이상”을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기준중”을 “기준 중”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하고, “당해업종”을 “해당 업종”으로 하며, “감면 할”을 “감면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8조 중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흡수정이하의장치”로 하고,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을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수도사용자 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9조의 규정을”를 “제19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조례에 의한”을 “조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처분케”를 “처분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 사건”을 “해당 사건”으로 하며, “재판에 의하여”를 “재판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한”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손실케 될”을 “손실된”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귀속한다”를 “귀속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를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로 한다.

제4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예에 의한다”를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47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제35조와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p>제1조(목적) ----- -----제38조----- -----제24조, 제32조, 제65조----- -----제4조에 따라----- -----.</p> <p>제2조(정의) ----- 용어의 뜻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공사"란----- -----철거 등----- -----. 2. "흡수정이하의장치"란----- ----- -----. 3. "특수가압시설"이란----- ----- -----. 4. "수도사용자등"이란----- ----- -----.

현행	개정안
<p>5. "<u>급수장치</u>"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u>기타의</u>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p>	<p>5. "<u>급수장치</u>"란----- ----- ----- ----- -----<u>그 밖의</u>----- -----.</p>
<p>6. "<u>세대</u>"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u>되어있고</u>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p>	<p>6. "<u>세대</u>"란 해당 건물----- -----<u>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u>----- -----.</p>
<p>7. "<u>호</u>"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p>	<p>7. "<u>호</u>"란----- ----- -----.</p>
<p>8. "<u>전용 계량기</u>"라 함은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8. "<u>전용계량기</u>"란----- ----- -----.</p>
<p>9. "<u>통합 계량기</u>"라 함은 공동주택등에 <u>공동의</u>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9. "<u>통합계량기</u>"란 공동주택 등----- ----- -----.</p>
<p>10. "<u>호별 계량기</u>"라 함은 공동주택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점검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p>	<p>10. "<u>호별계량기</u>"란 공동주택 등----- ----- ----- -----.</p>
<p>11. "<u>점검 계량기</u>"라 함은 공동주택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u>호별 계량기</u>와 동시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11. "<u>점검계량기</u>"란 공동주택 등----- ----- ----- -----<u>호별계량기</u>----- -----.</p>

현행	개정안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부천시</u>의 <u>관할구역</u>중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u>기타 비상사</u>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조(급수구역) -----<u>시</u>의 <u>관할구역</u> 중----- ----- ----- ----- ----- -----<u>그 밖의 비상사</u>----- ----- -----.</p>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공공급수장치: <u>5호이상</u> 영세주민의 공공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u>소화용급수장치</u>: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p>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5호 이상</u>----- ----- 3. <u>소화용 급수장치</u>----- -----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단, <u>흡수정이하의 장치가</u>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u>흡수정이하의 장치</u>를 설치하여야 한다. 2.~4. (생략)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u>다만, 흡수정이하의장치</u>----- -----<u>흡수정이하의장치</u>-----. 2.~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략)</p> <p>② 급수공사 신청인은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u>수리계산수수료</u>등)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u>구경100</u> <u>밀리미터이상</u>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u>설계금액</u> 확정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특수 가압시설, 흡수정</u> 이하의 장치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u>수용가로 하여금</u>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단, <u>흡수정이하의 장치</u>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u>흡수정이하의 장치</u>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치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u>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 ----- -----<u>수리계산수수료</u> 등----- -----.</p> <p>③ ----- -----<u>다만</u> -----<u>구경 100</u> <u>밀리미터 이상</u>----- -----<u>설계금액을</u> 확정된 후에 수 수료를 납부-----.</p> <p>④ -----<u>특수가압시설, 흡수정</u> <u>이하의장치</u> 설치----- ----- -----<u>수용가에게</u>----- ----- -----<u>다만, 흡</u> <u>수정이하의장치</u>----- <u>흡수정이하의장치</u>----- -----.</p> <p>제7조(공사의 시행) ① ----- ----- ----- -----</p>

현행	개정안
<p>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u>시공케</u>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u>제1항 단서</u> 규정에 의한 공사에 <u>있어서는</u>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u>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u></p> <p>④ <u>급수공사</u>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u>공사비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u>,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u>공사계약후 3일 이내</u>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u>기타 특별한 사유가</u>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u>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u>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u>제출케</u> 할 수 있다.</p>	<p>----- ----- -----<u>시공하도록</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u>----- ----- ----- ----- ----- -----<u>관급품인 시공자재는</u> <u>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u></p> <p>④ ----- -----<u>공사비를 납입한 날부터</u> <u>5일 이내</u>----- -----<u>공사계약 후 3일 이내</u>----- ----- -----<u>그 밖에</u>----- -----.</p> <p>⑤ ----- ----- ----- -----<u>공사용</u> <u>관급자재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u> <u>하여야 한다.</u>----- ----- -----<u>제출하도록</u>-----.</p>

현행	개정안
<p>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생략)</p> <p>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u>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u> 할 수 있다.</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생략)</p> <p>1. (생략)</p> <p>2. <u>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u>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p> <p>② (생략)</p> <p>1.~3. (생략)</p> <p>가.~나. (생략)</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u>당해 신청인</u>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u>개조공사</u>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장치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u>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u>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p>	<p>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대행업자에게</u> -----<u>제출하도록</u>-----.</p> <p>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건설산업기본법</u>」에 따른 <u>전문건설업</u>----- -----</p> <p>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가.~나.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u>해당 신청인</u>----- ----- ----- ----- -----<u>개조공사</u> 시----- -----.</p> <p>② ----- ----- -----<u>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u> <u>및 점검계량기</u>까지----- ----- -----.</p>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u>호별 계량기</u>가 설치된 경우 <u>호별 계량기</u>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p> <p>④<u>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u>에서부터 <u>건물안쪽</u>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 방지, <u>동파 방지</u>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② (생략)</p> <p>③선납된 공사비는 <u>공사준공후 정산</u>하여야 하며, <u>정산에 관하여</u>는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u>의한다</u>.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u>지정기일내</u>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u>있어서는</u>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u>국민기초생활보</u></p>	<p>③제2항----- ----- -----<u>호별계량기</u>-----<u>호별계량기</u>----- ----- -----.</p> <p>④ <u>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u>-----<u>건물 안쪽</u>----- ----- <u>동파방지 등</u>----- -----.</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사준공 후에</u>----- -----<u>정산은</u>----- ----- -----<u>따른다. 다만,</u>----- ----- -----.</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u>지정기일 내</u>----- ----- ----- -----<u>공사는</u>----- -----<u>「국민기초생활보</u></p>

현행	개정안
<p>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p> <p>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에 관하여는 부천시급수공사업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단,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범위 안-----.</p> <p>② -----지정기일 내-----.</p> <p>③ -----공사준공 후에-----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준공 후에-----.</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 -----별표 1-----제11조-----.</p>

현행	개정안
<p>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u>통합 계량기</u>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p> <p>③ (생략)</p>	<p>② 2호 이상----- -----<u>통합계량기</u>-----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권 운영할 수 있다.</p> <p>③특수가압시설의 <u>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u></p> <p>④타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 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u></p>	<p>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부에 따라</u>----- ----- ----- ----- ----- -----.</p> <p>③ -----<u>설치는</u> ----- -----<u>산출방법 등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u></p> <p>④ ----- ----- ----- ----- ----- ----- ----- <u>제2항에 따라</u>-----.</p>
<p>제14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들은 <u>흡수정이하의 장치</u>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4조(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 ① ----- ----- -----<u>흡수정이하의장치</u>----- ----- -----.</p>

현행	개정안
<p>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u>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u>케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5조(원인자 및 손피자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원인자 및 손피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서 <u>고지일</u>로부터 30일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부담금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p> <p>②수도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u>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u>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p> <p>③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복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u>관계기관</u>과 긴밀한 협조로 손피자를 확인 추적하여 시설물</p>	<p>② 흡수정이하의장치----- ----- ----- -----<u>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원인자 및 손피자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 ----- -----<u>고지한 날</u> 부터 30일 이내----- ----- ----- -----.</p> <p>② ----- ----- ----- ----- -----<u>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u> ----- -----.</p> <p>③ ----- ----- ----- -----<u>관계 기관</u> -----</p>

현행	개정안
<p>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피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p> <p>④ (생략)</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u>당해 공사</u>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p> <p>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u>준공 후 3년 이내</u>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u>기타</u>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u>당해 급수장치</u>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u>않고</u>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u>사유에</u>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 ----- ----- -----<u>해당 공사</u>----- -----.</p> <p>② -----<u>준공 후 3년 이내</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그 밖에</u>----- -----.</p> <p>제17조(수도의 사용) ① ----- ----- -----<u>해당 급수장치</u>----- -----<u>아니하고</u>----- ----- -----<u>사유에 따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8조(신고) ① (생략)</p> <p>1. (생략)</p> <p>2. 송배, 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p> <p>3.~7. (생략)</p> <p>8.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18조(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에</u>----- -----</p> <p>3.~7. (현행과 같음)</p> <p>8. <u>그 밖에</u>----- -----</p> <p>② <u>제1항에 따른</u>----- -----<u>직</u> -----<u>원에게 직접 조사하게</u>----- ----- -----.</p>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생략)</p> <p>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u>처리하게 하기 위하여</u>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그 밖에</u>----- --<u>처리하도록</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u>수도사용자</u>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u>않도록</u> 하여야 한다.</p> <p>②<u>수도사용자</u>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p>	<p>제21조(수도사용자등----- --) ① <u>수도사용자등</u>----- ----- ----- -----<u>아니하도록</u>----- -----.</p> <p>② <u>수도사용자등</u>----- -----</p>

현행	개정안
<p>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③ 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u>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u>으로 한다.</p> <p>④ <u>수도사용자</u> 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급수장치</u>에 관한 권리의무는 <u>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u>에 부수한다.</p> <p>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u>기타</u>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u>전항</u>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불가 피한</u>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 (생략)</p>	<p>----- ----- ----- ----- -----<u>아니 된다</u>. -----</p> <p>③ <u>제1항 및 제2항</u>----- -----<u>수도 사용자등</u>-----.</p> <p>④ <u>수도사용자등</u>----- ----- ----- -----.</p> <p>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u>급수장치</u>----- -----<u>해당 급수장치</u>----- -----.</p> <p>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u>그 밖에</u>----- ----- ----- ----- -----.</p> <p>② <u>제1항</u>----- ----- ----- -----<u>긴급하고 불가피한</u>----- -----.</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u>필요에 의하여</u> 시장에 계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구경별 정액 요금은 이를 징수한다.</p> <p>②급수의 중지는 <u>3개월이내</u>로 하고 <u>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u>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u>호</u>")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u>분양시</u>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③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u> 소재불명일 때 2. <u>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u>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u>제 1항에 의한</u>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5. (생략) 6. <u>제2조</u>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u>3개월이</u>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7. (생략) 	<p>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u>필요에 따라</u>-----</p> <p>-----</p> <p>-----</p> <p>-----</p> <p>-----</p> <p>-----</p> <p>② -----<u>3개월 이내</u>-----</p> <p>-----<u>신청에 따라</u>-----</p> <p>-----</p> <p>-----(<u>호</u>)를 포함한다)-----</p> <p>-----<u>분양 시</u>-----</p> <p>-----</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u>----- 2. -----<u>3개월 이상</u>----- 3. <u>제1항에 따른</u>----- ----- 4.~5. (현행과 같음) 6. <u>제40조에 따른</u> 정수처분 후-----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5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u>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u></p> <p>②<u>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u></p>	<p>제25조(요금의 징수) ① ----- -----<u>수도 사용자등</u>-----.</p> <p>②<u>수도사용자등</u>----- -----.</p>
<p>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u>업종별 효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이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p>	<p>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u>업종별 효율표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u></p> <p>② <u>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한다.</u></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u>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u></p> <p>②<u>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을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u></p>	<p>제27조(업종의 구분) ① ----- -----<u>제3호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u>---</p> <p>----- ----- ----- -----<u>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u></p> <p>② ----- -----<u>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u>----- ----- ----- -----<u>적용하는 것이 매우</u>----- -----<u>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분리설치한 후</u>----- -----<u>에 따로 조정할</u>-----.</p>

현행	개정안
<p>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15m³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4개월 평균량은 요율의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p>③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미터----- ----- -----.</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 -----매월 또는 격월-----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 ----- ----- ----- ----- -----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급수중지를 해제하고자 할 때 4.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 5. 시장이 수시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현행	개정안
<p>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u>5일 이내</u>에 실시하여야 한다.</p> <p>④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u>2개 이상</u>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p> <p>⑤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u>부과</u> 할 수 있다.</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u>수도계량기에 의하여</u>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u>기타</u>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p> <p>②<u>제1항</u>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u>4월</u>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u>4월</u>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p>	<p>③ ----- ----- ----- -----<u>5일 이내</u>----- -----.</p> <p>④ ----- -----<u>2개 이상</u>----- ----- -----.</p> <p>⑤ ----- ----- -----<u>부과할</u>-----.</p> <p>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u>수도계량기로</u>-----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p> <p>② <u>제1항의</u>----- ----- -----<u>4개월</u>----- ----- -----<u>4개월</u>----- -----.</p> <p>③ -----</p>

현행	개정안
<p>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 등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p> <p><신설></p>	<p>제33조(가산금) ①수도사용자등이 제26조에 따른----- ----- ----- 체납액의 100분의 3----- ----- -----.</p> <p>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수도요금고지서로 한다.</p> <p>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수도요금(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34조(납부고지) ① -----납부고지서에 따라-----.</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③ (생략)</p> <p>제35조(일시 급수사용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p>	<p>제35조(일시 급수사용금과 선납) ① -----일시적----- ----- -----</p>

현행	개정안
<p>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p> <p>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 수용가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이외의 계량기구경 100미터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p> <p>2.~5. (생략)</p> <p>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거 중수도의</p>	<p>----- -----.</p> <p>② 제1항----- 급수종료 후에-----과 부족액은 다음월분----- ----- -----.</p> <p>제36조(제수수료) ----- -----다 음 각 호----- -----.</p> <p>1. ----- -----가 정용 이외-----100밀 리미터 이상-----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준 중----- -----.</p> <p>2.~5. (현행과 같음)</p> <p>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 -----그 밖에----- -----.</p> <p>②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p>

현행	개정안
<p>설치를 완료하고 <u>사용중인</u>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u>당해업종의 수도요금</u>을 감면할 수 있다.</p> <p>③ <u>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u>다음 각호의</u>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④~⑤ (생략)</p> <p>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u>에는</u>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u>흡수정이하의 장치</u>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u>수도 사용자</u> 등에게 <u>이의 개수</u>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39조(급수표지) ① <u>수도사용자</u>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p> <p>② <u>전항의</u>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p> <p>제40조(정수처분) ① (생략)</p> <p>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u>기타</u>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u>기일내</u> 납부하지 아니한 자</p> <p>2.~7. (생략)</p>	<p>-----<u>사용 중</u>-----</p> <p>-----</p> <p>--<u>해당 업종</u>-----<u>감면할</u></p> <p>-----.</p> <p>③ <u>제2항에</u> 따라-----</p> <p>-----</p> <p>-----<u>다음 각 호</u>-----</p> <p>-----..</p> <p>1.~4.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p> <p>-----</p> <p>-----</p> <p>-----<u>흡수정이하의장</u></p> <p><u>치</u>-----<u>수도</u></p> <p><u>사용자</u>등에게 <u>이의 개수</u> 등-----</p> <p>-----.</p> <p>제39조(급수표지) ① <u>수도사용자</u>등</p> <p>-----</p> <p>-----.</p> <p>② <u>제1항</u>-----</p> <p>-----.</p> <p>제40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p> <p>1. -----<u>그</u></p> <p><u>밖에</u>-----</p> <p><u>기일 내</u>-----</p> <p>2.~7.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8. 급수를 남용하거나 <u>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u> 급수 판매한 자</p> <p>9. (삭제)</p> <p>10. <u>제18조의 규정에 의한</u>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p> <p>11.~12. (생략)</p> <p>13. <u>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u>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p> <p>② <u>전항에 의한</u>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p> <p>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u>다음 각 호에</u>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u>예산의 범위내에서</u>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u>처분케</u> 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금액 100분의 5)</p> <p>3. (생략)</p> <p>② 포상금은 <u>당해 사건</u>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u>재판에 의하여</u>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p> <p>③ <u>전항의 규정에 의한</u>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p> <p>제42조(과태료) 사기 <u>기타</u>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p>	<p>8. -----<u>제19조</u> <u>를</u>-----</p> <p>9. (현행과 같음)</p> <p>10. <u>제18조에 따른</u>----- ----- -----.</p> <p>11.~12. (현행과 같음)</p> <p>13. <u>그 밖에</u>-----<u>조례</u> <u>의</u>----- -----</p> <p>② <u>제1항에 따른</u>----- ----- -----.</p> <p>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u>다음</u> <u>각 호</u>----- <u>예산의 범위 안</u>-----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처분하게</u>----- -----</p> <p>3. (현행과 같음)</p> <p>② -----<u>해당 사건</u>----- -----<u>재판에 따라</u>----- -----.</p> <p>③ <u>제2항에 따른</u>----- -----.</p> <p>제42조(과태료)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p>	<p>----- ----- ----- ----<u>별표 4의 기준에 따른</u>---- ----- ----- ----- -----</p>
<p>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생략)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p>	<p>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그 밖의</u>-----<u>손실된</u> ----- -----<u>해당</u>----- ----- 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u>----- -----<u>귀속된다.</u></p>
<p>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p>	<p>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 ----- ----- ----- ----- -----<u>「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u>-----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p>

현행	개정안
<p>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u>기타</u>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u>그</u> <u>밖</u>에----- -----.</p>
<p>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u>기타</u>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u>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u>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44조(이의신청) ① -----<u>그</u> <u>밖</u>에----- ----- --<u>받은 날</u>부터 60일 이내----- -----. ② -----<u>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u>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p>
<p>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u>기타</u>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u>예</u>에 의한다.</p>	<p>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 ----- -----<u>그 밖의</u>----- ----- -----<u>예</u> 에 따른다.</p>
<p>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7조(시행규칙) -----<u>시행</u> <u>에</u> 필요한----- -----.</p>